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학금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 6. 8. 공포, 2021. 12. 9.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지원시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장학금 반납의무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곤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대보증 삭제(안 제4조)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보증방식을 도입

나. 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의 세무서 위탁(안 제16조)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장학금 반납금 미납시 부처 자체적으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위탁하는 절차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9. 10. ~ 10. 2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당해 의무자의 주소·성명·반납금액·반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를 “따른 징수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불가능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생 략)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지원에는 2인이상의 <u>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u> <u>첨</u> <u>부하여야 한다.</u>	②----- <u>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u> <u>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u> <u>를 포함한다)---</u> .
제16조(<u>체납처분</u>) 주무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 급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납부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 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 공무원법」 제36조제2항제2호 에 <u>따라 당해 의무자의 주소 ·</u> <u>성명 · 반납금액 · 반납사유 기</u> <u>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국</u> <u>세청장에게 체납처분을 요청하</u> <u>여야 한다. <후단 신설></u>	제16조(<u>강제징수</u>) ----- ----- ----- ----- ----- ----- -- <u>다른 징수를 국세 강제징수</u> <u>의 예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u> <u>이 경우 대상자 명의의 소득 또</u> <u>는 재산이 없거나 파락이 불가</u> <u>한 사유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u> <u>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u> <u>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u> <u>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u> <u>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u> <u>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u> <u>수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8224